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 조직적강령 > 에대한부록

디엘로트루다

디엘로트루다
< 조직적강령 > 에대한부록
1926.11.02

<http://www.nestormakhno.info/english/supporg.htm>

kr.theanarchistlibrary.org

1926.11.02

차례

(1) 아나키스트운동에서다수와소수의문제	6
(2) 자유소비에트체제	7
(3) 아나키스트들이이론적으로대중을추동할것이다.	8
(4) 혁명의방어	9
(5) 언론의자유, 발언의자유, 조직의자유등.	10
(6) 아나키스트의원칙“역량에따라일하고필요에따라분배한다”의적 절한해석	11

기대했던대로, < 자유의지주의자적코뮌주의자의조직적강령 > 은러시아자유
의지주의운동의여러투사들사이에서생생한흥미를불러일으켰다. 일부는 <
강령 > 의사상전반과그근본적명제들에대하여받아들였지만, 다른이들은그명
제들에대하여비판을가하고의혹을제기해왔다.

우리는 < 강령 > 에대한긍정적반응과진실한비판을모두동등하게환영한다.
총체적인아나키스트의강령을건설하는과정에서, 총체적인자유의지주의적조
직을건설하는과정에서진실하고진지하며본질적인비판은긍정적이고창조적인
진취성만큼이나중요한것이기때문이다.

우리가다시이야기하기로마음먹은아래사항들은진지하고필수적인비판에
서비롯된것이다. 우리는이비판을만족스럽게받아들인다. 이비판의작가인마리
아이시딘 (수년간투쟁해온투사로서우리의운동에서존중받는존재) 은비판문과
함께다음과같은편지를보내왔다.

“당연하게도, 조직적강령은모든아나키스트들이논의하도록만들어진것입
니다. 이‘강령’에대한최종의견을정하고, 아마도공개적으로그것을말하기전에,
나는충분히설명되지않은특정문제들에대한설명을요청합니다. 이를통하여다
른독자들역시‘강령’을충분히적확하게바라볼수있을것이고, 오해에기반한반대
를멈출수있을것입니다. 내가동지들에게질문들을던지는이유가바로이것입니
다. 이것들에대한명확한답변을주시기바랍니다. 동지들의답변이 < 강령 > 의
총체적인정신을담고있을것이기때문입니다. 검토를위해서라도답변이필요할
수있을것입니다.”

마리아동지는편지를마무리하면서, 디엘로트루다의칼럼을둘러싼논란을잠
재울수있게되기를바란다는의사도덧붙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마리아동지가
강령의특정한핵심부분을명확히하고자하는이유입니다. 이러한접근방식은매
우공정합니다. 특정한관점에반대하기위해동의하지않는이와격렬한논쟁을벌
이는것은너무쉬운일입니다. 긍정적인대안을제시하지않고단지논쟁만을하는
것은더욱쉬운일이지요. 새로운입장을적절하게분석하고, 이해하여기반이잘닥
인의견을도출해내는것이야말로어려운일입니다. 그리고질문을던지신마리아
동지는이마지막길을택하였습니다.

그리고이것이마리아동지의질문입니다.

“**강령**은공통적인전술과노선에기초하여아나키스트운동의무장세
력대부분을규합하는것, 즉 **총동맹**의구성에그중점을두고있습니
다. 당신은연방주의자이상, 분명히” 독자적집단의활동의이념
적, 조직적행동” 을담당할 **집행위원회**의존재를염두에두고있을것
이라봅니다. 그런기구는다른정당에서찾아볼수있는것이지만, 다
수결원칙을받아들여야가능할수있습니다. 동지들의조직에서각그
룹이주어진문제에대해자유롭게자신의전술을준비하고수립하거
나, 자신의입장을수립할수있을까요? 만약대답이’ 그렇다’ 라면,

여러분의단결은순전히도덕적인것에지나지않게될것입니다 (그리고이것은아나키즘운동의현상태이기도합니다). 반면에, 만약여러분이조직적인통합을추구한다면, 그통합은필연적으로강요될것입니다. 그리고만약여러분이조직내부에서다수결원칙을받아들인다면, 사회를그방식으로재조직하지못할이유가있을까요? 동지들이연방주의적연결에관한, 대의원의역할에관한, 다수결의원칙에관한개념을명확히해주시면좋겠습니다.

“자유소비에트체제’에대해말하자면, 당신은이소비에트들이” 건설적인비국가적활동의첫단계” 가되기위해어떤기능을수행해야한다고보십니까? 그들의역할은무엇이어야합니까? 그들의결정은구속력이있을까요?

“강령은“아나키스트들이이론적으로추동해야한다” 고말합니다. 이개념은명확하지않습니다. 이것이단순히새로운질서를구축하려는조직 (노동조합, 지역조직, 협동조합등) 들을자유주의사상에물들이기위해아나키스트들이최선을다하겠다는말입니까? 아니면아나키스트들이스스로이건설의책임을지겠다는말입니까? 후자의경우, 그상황이” 당에의한지도” 와어떤면에서다른겁니까? 이문제를명확히하는것은매우중요합니다. 특히노동조합에서아나키스트의역할에대해서도같은의문이제기됩니다. ” 조직적인방식으로조합에침투한다” 는것이무슨의미를가지나요? 노동조합운동에종사하는동지들이정책노선을구축하기위해어떤합의를도출해야한다는의미일까요? 아니면아나키스트집행위원회가노동운동의전술, 파업과시위등에대한규칙을규정하고조합에서활동중인무정부주의자들이조합의지도자직위를차지하고자하고, 그지도자로서의권위를이용하여집행위원회의결정을조합원들에게강요한다는것을의미할까요? 노동조합에서활동하는아나키스트조직의활동이” 아나키스트총동맹에의해추동되어야한다” 는강령에서의언급은이부분에대한온갖불안을불러일으킵니다.

“혁명의방어에관한부분에서, 군대는” 경제·사회생활을통제하기 위해대중에의해세워져전국적으로존재하는노동자와농민의조직과그조직이대변하는노동자, 농민대중에대한완전한복종” 의원칙위에서어제야한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말하면, 그것은선출된사람들의’ 민권’ 이라고불립니다. 그게당신에게어떤의미인가요? 경제·사회생활을통제하고군대를소집할수있는조직은다름아닌국가권력자임이분명합니다. 이점은매우중요하기때문에강령의작성자는이점에대해더오래속고할의무가있습니다. 이것이” 이행기적형태” 일뿐이라면, 강령은왜“이행기개념”을거부합니까?

만들어내는 핵심적지점이다. 우리의아나키스트적원칙은모든개인이자신의필요에비례하여자신의역량과능력으로사회에복무하고, 복무하지않는다면, 필요를충족하지못할것이야기한다.

어린이, 노인, 병자, 노약자등은예외로한다. 당연히, 사회는그러한모든사람들을노동의의무에서면제해줄것이며, 그들의모든필요를충족시킬권리를부인하지않을것이다.

노동대중은누군가가자기필요에따라사회에서원하는만큼가져가고, 그누군가의기분에따라분배하거나말거나하는원칙으로부터깊은분노를느끼고있다. 노동대중은이명칭한원칙의적용으로부터너무오래고통받아왔고, 그렇기에노동대중은이부분에대하여급히지않을것이다. 우리의정의감과논리역시이원칙에분노하고있다.

이입장은노동대중의자유로운사회가공고해져반혁명적으로새로운생산을사보타주하는계층이더이상존재하지않고, 소수의게으름뱅이들만이있을때비로소바뀔것이다. 그제야“역량에따라일하고, 필요에따라분배한다”는아나키스트적원칙이사회적으로온전히실현될것이다. 이원칙에기반한사회만이온전한자유와참된평등을누릴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그때에도, 사회의물질적, 정신적자원에대한권리를누리는모든신체건강한사람들은, 그자원의생산과관련하여특정한의무를부담하게될것이다.

바쿠닌은, 당대에이문제를분석하면서, 성숙한아나키스트적사상과행동을보여주었다. “밥을먹고싶다면노동해야한다. 노동을거부하는사람은, 그들에게적선하여먹여줄조직이나마을을찾지않는한, 자유롭게굶어죽으면된다. 이들에게어떠한정치적권리도주지않는것은타당해보인다. 일할수있음에도일하지않는그들의부끄러운모습은스스로의선택이며, 그들은타인의노동에의존하여살아가고있기때문이다. 각각의개인이수행하는노동외에사회적/정치적권리의기반이될수있는것은없다.”

그리고만약이것이최종형태라면, 왜강령이아나키스트적문건일까요?

“강령에서다룬문제는아니지만내동지들이의견이갈리는몇가지질문이있습니다. 그질문중하나를인용해보겠습니다. 한지역이사실상무정부주의자들의영향아래있다고가정해봅시다. 그들의다른정당에대한태도는어떨까요? 강령의저자들은비무장한적에대한폭력의가능성을인정합니까? 아니면아나키스트적이상에따라언론, 조직등에대한제한없는자유를인정합니까? (몇년전만해도이러한질문은무의미한것으로보였을겁니다. 하지만오늘, 제가인지하고있는몇몇견해들은, 제가그답을확신하지못하게하네요.) 그리고, 광범위하게말해서, 타인의결정을강제로집행하는것이허용될수있을까요? 강령의저자들은비록일시적일지라도강제력의행사에동의합니까? 이모든질문에대한다엘로트루다그룹의대답이무엇이든간에, 저는강령의한가지부분이, 그들이공언하는아나키스트공산주의와공공연히대립하고있다고말할수밖에없습니다. 동지들은임금체계와착취가일단폐지되면, 그럼에도불구하고비노동자적요소들이남아있을것이라고추측합니다. 그리고이런요소들은노동대중의연합에서제외됩니다. 그들은공동생산물에대한그들의몫에대한권리를갖지못할것입니다. “필요에따른분배”는언제나아나키즘의기초에있었습니다. 그리고아나키스트들은그원칙에서사회적연대가가장잘보장된다고보았습니다. 아나키스트들은” 게으름뱅이들이어떻게할것인가?” 라는질문에대하여, ” 게으른이들을먹이는것이사회적삼에거짓되고해로운원리를도입하는것보다낫다.” 고대답하여왔습니다. 그리고동지들은정치적인이유로, 일종의게으름뱅이라는범주를만들고, 억압을통해, 그들을배고픔으로죽게만들고자합니다. 도덕적인측면을떠나서도, 동지들은그것이어떻게귀결될지생각하지못합니까? 모든노동하지않는사람에대하여, 우리는그들이일을하지않는근거를확인해야할것입니다. 우리는그들의신념을탐색해야할것입니다. 만약누군가가주어진임무를수행하기를거부한다면, 우리는그거절의이유를조사해야할것입니다. 우리는그것이사보타주나반혁명이아닌지살펴봐야할것입니다. 그렇지않다면우리의사회는첩보활동이, 강제노동이, ” 노동력동원” 이, 그리고무엇보다, 생명에필수적인생산물은반대파를굶겨죽일수있는권력자들의하사품이될것입니다! 정치적투쟁의무기로서배급말입니다! 동지가러시아에서본광경이이러한비열한협잡이아닙니까? 그리고저는그것이단순히혁명에위험적이라고, 사회적연대에대한노골적인배반이위험한적을만들어낼뿐이라고말하는것이아

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러한 사회조직이 아나키스트적 개념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만약 이 점에 대해 양보를 하게 된다면, 결국 그 사회는 다른 모든 아나키스트적 발상들 역시 폐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접근은 비국가적 사회조직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 강령 > 에 대하여 기고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회색 영역이 해명될 때까지 미루려 합니다.“

그리고 < 조직적 강령 > 은 위에 인용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자 한다. 특히 다음의 문제들에 대하여 주로 다루어볼 것이다.

- 아나키스트 운동에서 다수와 소수의 문제
 - 자유 소비에트 체제의 구조와 필수적 기능의 문제
 - 대중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추동의 문제
 - 혁명의 방위의 문제
 - 언론과 발언의 자유의 문제
 - “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아나키스트적 원칙에 따른 건설의 문제
- 이 문제들을 하나 하나 다루어보자.

(1) 아나키스트 운동에서 다수와 소수의 문제

마리아동지는 이 문제를 우리의 **총동맹 집행위원회**에 대한 생각과 연동시켜 접근하고자 한다. 만약 **총동맹 집행위원회**가 행정적 기능 외에 “개별 조직의 활동을 이론적이고 조직적인 관점에서 추동”하는 기능 또한 가지고 있다면, 이 추동은 억압적이어야 하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동맹에 맹한 조직들은 스스로의 전술을 준비하고 입장을 결정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동맹의 다수가 결정한 전술과 입장에 따라야 하는가?

우선 우리가 볼 때, 총동맹 집행위원회는 중앙집중적 정당 집행위원회와 달리 강압적인 성격을 지닌 권력 기구가 될 수 없다. 아나키스트 총동맹의 집행위원회는 동맹에서 일반적인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 집행위원회” 대신에, ” 동맹 최고 사무국” 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 집행위원회” 라는 이름이 그 행정 기능과 자주성을 더 잘 드러내는 이름이라 하겠다. 집행위원회는 어떤 식으로든 고립된 집단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이론적, 조직적 의미에서 그들의 활동을 추동할 수 있을 것이다. 동맹 내부에는 다양한 전술적 문제들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는 조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언제나 특정 조직들에게는 이데올로기적이나 조직적인 보조가 필요하다. 집행위원회가 이러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집행위원회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동맹이 채택한 전술적/조직적 노선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들과 반란군들이 카데츠에게 언론의 자유를 허용해야 하는가? 그 언론이 군사적 역할을 할 것이 자명한 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전 상황에서는 이런 사례가 여러 번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노동자와 농민들은 언론과 발언의 자유와 포괄적 원칙이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군사투쟁과 관련해 적의 대변자들이 맡게 될 역할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내전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리한 노동자들은 좌파적 견해와 우파적 견해를 막론한 언론과 발언의 자유를 똑같이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유는 자유노동대중 사회의 자부심과 기쁨이 될 것이다.

아나키스트들은 계급적들과의 싸움에서 혁명적인 폭력을 지지한다. 아나키스트들은 노동대중이 이것을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그들은 단 한 순간이라도 권력을 휘두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결정을 무력으로 대중들에게 강요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러한 연관성에서 아나키스트들의 방법은 선전, 논쟁, 그리고 말과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설득이 될 것이다.

(6) 아나키스트의 원칙 “역량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의 적절한 해석

이 원칙이 아나키즘적 코뮌주의의 초석임에는 질문할 여지가 없다. 이것만큼 아나키즘적 코뮌주의의 이상에 적합한 경제적, 사회적, 법적 언명은 없다. 강령은 또 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사회 혁명은 현존하는 사회 질서 전체를 재건할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 모든 인민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제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나키스트 사회의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원칙의 선언일 뿐이다. 그것은 사회 혁명 초기의 실제적인 요구와 구별되어야 한다. 파리 코뮌과 러시아 혁명의 경험에서 보듯, 비노동 계급은 패배하지만 결정적으로 패배하지는 않는다. 혁명 초기에 그들은 하나의 생각에서 사로잡힌다. 모이고, 혁명을 타도하고, 잃어버린 특권을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경우, ” 각자의 필요에 따라 ” 혁명적 지역의 생산물을 공유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하고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반혁명적 계급들을 부양하는 것이라는 도덕적이고 전술적 어리석음은 제쳐두더라도, 새로운 계급이 즉각 등장할 것이고, 혁명이 모든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하려는 것을 이용하여 노동하지 않고 게을러질 것이다. 이 이중의 위험을 무시할 수는 없다.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저 새로운 계급은 혁명의 장점을 빠르게 편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반혁명적이고 노동적이지 않은 계급을 유용하게 노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분야에서든, 어느 정도든, 이 계급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직업을 스스로 찾아야 할 것이다. 사회의 생산량에서 그들의 몫에 대한 그들의 권리가,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의무를 지지 않는 권리는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의 아나키스트적 원칙이다.

(5) 언론의자유, 발언의자유, 조직의자유등.

승리한프롤레타리아는이제는패배한숙적들과억압자들의언론의자유도, 발언의자유도빼앗아서는안된다. 하물며승리한프롤레타리아대오내의혁명적사회주의조직과아나키스트조직이라면더욱그러하다.

노동대중에게발언과언론의자유는필수적이다. 이는그들이건설적인경제적/사회적노력에소요되는과업들을더잘인지하도록하난. 그리고무엇보다이자유를통해노동대중은적들의핵심적성격을, 주장을, 계획과의도를알아낼수있다.

자본주의언론이, 기회주의적사회주의자의언론이혁명적노동대중을오도할수있다는것은사실아니다. 혁명적노동대중은거짓말을하는언론을해독하고폭로하여마땅히받아야할답을얻을수있을것이다. 언론의자유와발언의자유는자본가나국가사회주의자들처럼더러운행위를통해살아남는사람들을겁주어거대한노동대중의눈으로부터숨게할것이다. 노동대중에게언론의자유는엄청난이득이될것이다. 그것은그들이모든것을들을수있게하고, 스스로사물을판단하게하며, 그들의이해를더깊게하고, 그들의행동을더효과적으로만들수있게할것이다.

언론과발언의자유를특정인이독점하거나, 특정정당의도그마에정합한것만에대하여로그자유를한정하는것은그독점자와언론에대한신뢰를망칠것이다. 언론의자유가억압된다면, 그것은진실을감추고자하는욕구가있기때문이다. 그리고이것은볼셰비키가놀라운방식으로보여주었다. 그들의언론은총검아래에서신뢰를얻고, 필요에따라사전에검토된다. 다른언론은없다.

그러나, 언론, 혹은언론의남용이혁명적유용성이유로제한될수있는구체적인상황이있을수있다. 러시아혁명시대의한가지사건을보자.

1919년 11월, 예카테리노슬라프(현재의드니프로)는마흐노우슈치나반란군의통제하에있었다. 하지만동시에, 예카테리노슬라프는드니프르강좌측의아무르와니즈네드네프로프스크를점령하고있던데니킨부대에의해포위되어있었다. 그리고야코프슬라시초프가이끄는데니킨군부대가북방크레멘추그지역으로부터예카테리노슬라프를향해진군을시작했다.

당시에예카테리노슬라프에는, 언론의자유가있었기에, 마흐노우슈치나의기관지푸츠크스보보디(“자유를향하여”), 사회혁명당우파의기관지나로도플라스티에(“인민의힘”), 우크라이나사회혁명당좌파의기관지보르트바(“투쟁”), 그리고볼셰비키의기관지즈베즈다(“별”) 등과같은일간지들이발간되고있었다. 데니킨군의영적지도자였던카데츠만이신문을발행하지못했다. 자. 이제카데츠가예카테리노슬라프에서자체적으로기관지를펴내고싶어했다고해보자. 이것은데니킨의작전행동에도움이되었을것임은부정할수없다. 혁명적노동자

그러나그럼에도불구하고, 일부단체나다른단체들이자신들의전술노선을추구하겠다는뜻을나타낸다면, 집행위원회나동맹이그들을막을수있는위치에있을것인가? 다시말해서, 동맹의전술적, 정책적노선은다수예의해결정되어내려질것인가, 아니면모든그룹이적합하다고생각되는대로운영되어동맹내부에도수개의노선이있을것인가?

원칙적으로우리는동맹이하나의전술적, 정치적노선을가져야한다고생각한다. 동맹은무정부주의운동의방탕과조직부전을중식시키기위한목적으로고안되었으며, 서로마찰을일으키는여러전술적노선대신에모든자유지지주의세력이공통의방향을추구함으로써궁극적으로그목적달성할수있도록하는총체적노선을두고자고안되었다. 그것이없다면연합은주요한존재의이유하나를잃게될것이다.

다만몇몇문제에대한동맹구성원의의견이갈라져다수파와소수파의시각차이가등장할수도있다. 이러한사례는모든조직과모든당사자의생활에서흔히볼수있다. 그리고보통그러한상황은해결된다.

우리는무엇보다도, 동맹의단결을위해서, 그러한경우에, 소수의견이다수에게양보해야한다고생각한다. 이것은소수자와다수자사이의대수롭지않은의견차이의경우에는쉽게달성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소수파가자신의관점을포기하지않으려한다면, 동맹내에서다수의견해와전술, 그리고소수의견해와전술이라는두가지다른견해와전술을가질가능성이있을것이다.

그경우에, 동맹은각입장들을총체적으로숙의하여야할것이다. 숙의를거쳐동일한사안에대해서로다른두가지관점이실현가능한것으로판단된다면, 그두가지의견의공존은가능한것으로받아들여질것이다.

끝으로이들을분리하는전술적·정치적사안에대해다수세력과소수세력간합의가불가능하다고판명될경우, 소수세력이이탈해별도의조직을찾기위한분열이발생하게된다.

이것이특정의제에대한동의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가능한세계의결과들이다. 모든경우에서, 문제는단순히동맹의행정기구일뿐인집행위원회가아니라, 동맹이라는총체가, 동맹의총회나대의원대회가이를결정할것이다.

(2) 자유소비에트체제

우리는현재의(볼셰비키적) 소비에트구성에반대한다. 이소비에트는국가와다른형태를의미할뿐이다. 노동자농민대표자의소비에트는정당이운영하는국가의정치조직이되었다. 우리는이러한체제의대안으로노동자농민의생산/소비조직의소비에트를제안한다. 이것이“소비에트와공장위원회의자유로운체제”라는구호의의미이다. 우리는이체제가그모든부문과기능이노동대중의생

산/소비조직의손으로집중되어, 전체노동대중의필요를충족할수있도록가능하는경제적/사회적협약이라바라본다. 이러한조직들과소비에트들의연방은국가와자본주의체계를철폐할것이다. 그리고자유소비에트체제의핵심이될것이다. 분명히말하지만, 이러한체제가아나키스트코윈의온전한이상이지는않을것이다. 하지만이것은아나키스트코윈의최초의집행사례가될것이고, 노동대중의자유롭고비국가적인창조성의시대를열것이다.

우리는노동자농민의조직, 혹은공장위원회소비에트가경제적/사회적삶의다양한영역에서내리는결정들이, 폭력이나법령을통해서가아니라, 노동대중과의공통의이해를통해집행될것이라본다. 하지만이결정은그들을선출하고지지는이들에게구속력을가져야할것이다.

(3) 아나키스트들이이론적으로대중을추동할것이다.

대중의혁명적요소와그들의혁명운동을추동한다는것은결코일부아나키스트들이새로운사회를스스로건설하고자하는의도로받아들여져서는안되고, 그렇게될수도없다. 이건설의과업은전체노동사회의손으로가야니면이루어질수없다. 이과업은그들에게만주어지는것이며, 이권리를빼앗으려는모든시도는반-아나키스트적이라여겨져야한다. 이데올로기적조타의문제는사회주의적건설의문제가아니라혁명적인투쟁을염두에둔이론적, 정치적영향력을가지는문제이다. 대중적혁명투쟁의성격과방침에관심을갖지않는한, 우리는혁명가도투사도될수없다. 그리고그투쟁의성격과방침은객관적인요인뿐만아니라주관적인요인, 즉다양한정치집단의영향력에의해서도결정된다. 그렇기에우리는혁명적투쟁에서아나키스트의이데올로기적영향을극대화하기위해모든힘을다해야한다.

오늘의” 전쟁과혁명의시대” 는놀라운급진성으로주요한딜레마를제기한다. 혁명적인사건들은 (국가사회주의도포함하여) 국가주의, 혹은반국가주의(아나키즘) 적사상의추동아래서발전할것이다. 그리고, 우리는국가주의가혁명을패배시키고대중을새로운노예로만들것이라는흔들리지않는확신을가지고있다. 그렇기에우리의과업은그혁명이무정부주의적경향에의해형성되도록가능한모든것을해야한다는것은당연한일이다. 이러한조건에서, 우리의오래된운영방식, 즉, 작고흩어진집단에의존하는원시적인방식으로는과업을수행하지못할뿐만아니라오히려그수행을방해할것이다. 그렇기에우리는새로운방법론을도입해야한다. 우리는아나키즘의이론적인영향이사건의진행에미치도록조직해야한다. 서로다른사소한행동을통해간헐적으로영향력을발휘하는것이아니라, 그것은강력하고지속적인영향력을만들어야한다. 우리는, 아나키즘최고의투사들이이론적으로나실제적으로나강력하고적극적이며이론과전술면에서근거가

있는조직체, 즉아나키스트총동맹으로조직하지않는한, 그것은거의불가능할것이라고본다. 혁명적조합주의를이론적인측면에서추동하는시도가이루어져야하는것도같은의미이다. 조직적인방식으로노동조합에침투한다는것은노동조합내에서활동하는모든아나키스트가서로일치하는특정한이론, 계획된작업의전달자가되는것을의미한다. 아나키스트총동맹은노동운동전반이나, 파업이나시위를위한전술과계획을수립할수있을것이다. 하지만총동맹은노동조합내에서그노동계급의혁명적전술을다양한사건속에서퍼뜨려야한다. 하지만, 그사상을퍼트리기위해서는아나키스트들이각자와는물론이고, 그들이소속되어있는상급조직과분명한합의를이루어야한다. 그리고그조직의이름으로이데올로기적이고이론적인작업을수행하여야한다. 노동조합내에서조직적인방식으로자유주의적노력을수행하고, 아나키스트적노력이일치하도록하는것은권위주의적절차와는아무런관계가없다.

(4) 혁명의방어

혁명의방어에대한강령의테제에대한마리아동지의반대는, 다른그어떤것보다더오해에바탕을두고있다.

강령은내전이라는조건에서, 노동대중이그들의혁명군을만드는것의필요성과필연성을강조한다. 또한이군대가노동자와농민의생산/소비조직의전반적인방향에종속되어야할것이라고주장한다.

군대를이조직들에종속시키는것은선출된시민적권력과같은사상을전혀의미하지않는다. 절대로. 군대는, 그정신과상징성면에서가장혁명적이고가장인기있는군대일지라도, 자체주도적으로존재할수도, 작전을수행할수도없다. 군대는노동대중의권리와혁명적위치를방어하기위한기관이어야한다. 바로그목적때문에, 군대는노동대중에게정치적측면에있어전적으로종속되어야한다. 우리는정치적이라강조하는것은, 군사적이고전략적인방향에있어서는, 군대내부의군사체가이를다루어야하며, 노동자와농민의지도조직에게책임을다해야하기때문이다.

하지만정치적으로군대는누구에게직접적으로책임을져야할까? 노동대중은단일체를구성하지않는다. 그들은다양한경제단체로대표될것이다. 그리고이같은조직들의연방체에군대는종속될것이다. 이연방체의성격과사회적기능은이문건의시작부분에기술되어있다.

노동대중의혁명군이라는개념을수용할지말지는각각의판단이다. 하지만만약군대가구성된다면, 그군대는노동자와농민의조직에종속되어야한다는원칙을수용하여야한다. 이문제에대한다른대안은없다.